고려시대 천시론적 급가제도와 연(年) · 계(季) · 월(月) 주기성 구조

하수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 박사, 민속학 전공 lunayena@naver.com

I. 머리말

II. 『고려사』의 〈관리급가조〉와 천시론적 급가제도
III. 현망·절기 급가제도와 1월 4주 주기성
IV. 속절 급가제도와 1년 4계 계절성
V. 맺음말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한국 명절의 역사와 휴일의 변동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3)의 II장 '고려시대 천시론적 節日과 급가제도의 성립'의 내용 일부를 수정 \cdot 보완한 것이다.

I. 머리말

오늘날 한국의 휴일제도는 1년을 12달로, 1달을 4주로 구획하고 일요일을 휴일로 하여 일상의 시간에 리듬을 준다. 휴일은 흘러가는 나날에 특별한 시간의 마디로 사회 구성원들에 체화되어 있다. 이러한 리듬과 주기성이 현대 한국의 시간문화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고려시대에도 오늘과 유사한 주기성을 토대로 하는 정기 휴일제도가 있었다.

고려의 정기 휴일은 관리를 대상으로 일정한 주기마다 쉬는 날인 휴일, 즉 급가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져 있었다. 『고려사』 「형법지 (刑法志)」의 〈관리급가조(官吏給暇條)〉는 고려의 관리 급가제도 규정을 담은 조목이다. 이 조목은 고려의 급가일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는 까닭에 그 안에 숨겨진 급가일의 주기성 구조는 비교적최근에 이르러 주목받고 있다.1)

《관리급가조》를 통해 파악되는 고려시대의 급가는 기본적으로 절일에 대한 급가이다. 24절기일의 절일과 각종 속절일이 고려시대 급가일에 두루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역(易)과 역(曆)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천문역법사상의 토대에 성립된 절일은 국가의례일 구성에 밀접히 연관되었으며2》, 천인감응사상이 시간의 바탕에 구현될 때에 그 교감이가장 농밀히 이루어지는 시일로 여겨졌다. 고려의 천문관에도 동아시아적 천인합일사상이 반영되었으며3》, 천지의 순행에 천자를 중심으로 인간이 이에 감응하는 천인합일의 월령(月令) 사상은 고려 초기에 이미수용되어 농경의례와 농업생활에 영향을 미쳤다.4

또한 연간 순환하는 특정 시일을 기려 제사 지내거나 24절기 체제를 농사력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시간 문화는 시대와 제도가 변화하여도

¹⁾ 서금석·김병인,「역사적 추이를 통해 본 고려시대'臘日'에 대한 검토」,『한국사학보』 56(고려사학회, 2014. 8); 하수민,「고려시대 천시론적 節日과 급가제도의 성립」,『한 국 명절의 역사와 휴일의 변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8).

²⁾ 김일권, 「시간의 역사와 천문역법사상」,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예문서원, 2007).

이희덕,「고려시대의 천문관과 유교주의적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7(한국사연구회, 1977).

⁴⁾ 한정수,「고려시대 농업정책과 농경의례」,『한국중세사연구』 38(한국중세사학회, 2014. 4)

민간의 관습에는 일정 부분 남아 세시풍속으로 전승된다고 믿었다. 5 고려시대와 현재 사이에는 길게는 천 년 가까이 시간의 간격이 있어 오늘날의 세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관리 급가조〉에 나타나는 급가일이자 절일이었던 시일의 명칭들이 그리 낯설지 않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의 명절 휴일이 한국 근현대사의 민족주의적 함의를 지니는 전통 명절이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순환하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관련한 집단기억을 끊임없이 강화하듯 고려시대에도 절일의 주기성과 구조에 고려 사회가 추구했던 문화적 지향성을 담아냈으리라 생각한다. 이에 고려시대 정기급가일의 주기성 구조를 파악해보고, 그 문화적 함의 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고려의 관리 급가제도 분석은,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고려 사회에서 귀족 중심의 관리 급가 규정이 실제 강력히 실시되었는지, 어느 정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등의 실증과는 별개로, 이러한 규정의 존재를 통해 고려가 체계적 주기성을 가지고 시간 제도를 운영했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닌 시일에 급가를 주는 방식으로 그날을 기렸다는 사실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Ⅱ. 『고려사』의 〈관리급가조〉와 천시론적 급가제도

우리는 흔히 쉬는 날을 '휴가(休暇)'로 일컬으며, 이는 한자어로 '쉬는 한가하 틈'을 뜻한다. 고려의 〈관리급가조〉는 휴가를 '급가(給暇)'로 표현

⁵⁾ 연중의 절일을 통칭하는 세시에 관한 연구는 일제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조선 총독부의 자료[조선총독부 편, 『조선의 연중행사(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昭和 10年(1935)]가 발간되었고, 조선인으로서는 최남선이《매일신보》에 연재한「조선상식」(1937)에서 세시를 다루었다. 이는 수정·보완되어 광복 직후 단행본 『조선상식 풍속편』(동명사, 1946)으로 출간되었으며, 두 글의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광복 이후에는 『동국세시기』등 19세기 세시기류를 참조한 최상수의 연구(『한국의 세시풍속』, 홍인문화사, 1960)가 주목되며, 세시농경의례로서 세시풍속의 재발견이 완성된 1980년대에는 김택규의 『한국농경세시의 연구』(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이두현의 『한국민속학논고』(학연사, 1984), 임동권의 『한국세시풍속연구』(집문당, 1985) 등의 성과가 축적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농경사회였던 한국이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동되면서 근래에는 세시에 나타나는 요소들의 문화적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김명자, 「세시풍속을 통해 본 물의 종교적 기능」,『한국민속학』 49, 한국민속학회, 2009).

하는데, 조어대로 풀이하면 한가한 틈을 준다 또는 휴식의 틈을 준다는 의미이다.⁶⁾ 고려의 급가가 오늘날의 휴가와 유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의 관리 급가·급가일은 오늘날의 공무원 휴가·휴일 관념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개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형법지(刑法志)」와「예지(禮志)」의 일부 조목에는 고려시대 급가제도의 흔적이 남아 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고려의 시간제도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준다. 「형법지」는 그 축자적 의미에서 보듯 고려시대 형벌과 법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고려 사회의 법제적 측면을 보여주는 통로이다. 「예지」는 예법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어 예제적 면모를 알려준다. 고려의 급가제도는 『고려사』의 관련 조목 편성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법제와 예제의 양면에서 조망ㆍ경영되었다.

『고려사』「형법지」에 편성된〈관리급가조〉는 급가제도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 글의 주된 분석 대상이다. 그 외에도 『고려사』에는 직접적으로 급가와 관련된 제도의 내용을 실은 조목이 몇몇 더 있다. 〈관리급가조〉와 함께 대략 다섯 가지로 모아지는 이들 조목은 「형법지」 의 ①〈관리급가조(官吏給暇條)〉,②〈금형조(禁刑條)〉와「예지」의③ 〈오복제도조(五服制度條)〉,④〈백관기가조(百官忌暇條)〉,⑤〈대부사서 인제례조(大夫士庶人祭禮條)〉이다. 이 다섯 조목의『고려사』내 편제는 다음과 같다.

자료1-『고려사』의 급가 운영 관련 규정 현황 「형법지」

① 형법지,公式,官吏給暇

⁶⁾ 휴가는 한자어로 '휴가(休暇)'와 '휴가(休假)' 모두 가능하다. 전자는 '한가히 쉬는 틈'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후자는 휴가의 임시성을 더 강조하는 표현이다. 고려에서는 휴가를 제도화했던 만큼 그에 대한 인식도 임시성보다는 제도성에 가까웠다. 그러나 나라나 시대에 따라서도 휴가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 예컨대 당(唐)에서는 고려와 달리 '가령(假寧)'이라 표현하고(『당육전』권2, 尚書東部, 東部尚書 侍郎, 東部郎中 員外郎, "內外官東則有假寧之節.") 귀향하여 부모를 찾아뵙고 안녕을 묻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의 휴가 관념도 '가(假)'를 사용하여 '休假'를 "'休'는 쉬고 그치는 것이다. '假'는 쉬는 것과 말미이다(休假. 休, 息止也. 假, 休告也)"라고하며 임시적인 말미의 개념으로 정리했다(정긍식 외, 『역주 경국대전주해』, 한국법제 연구원, 2009, 107쪽).

관리의 휴일을 지정하는 기본 규정(『고려사』 지38, 형법1)

- ② 형법지,名例,禁刑 형벌을 금하는 날짜에 관한 규정(『고려사』 지38, 형법1) 「예지」
- ③ 예지, 凶禮, 五服制度 오복제도 관련 급가 지침(『고려사』지18, 예6)
- ④ 예지, 凶禮, 百官忌暇 (조)부모의 忌日에 발생하는 급가 지침(『고려사』 지18, 예6)
- ⑤ 예지, 吉禮小祀, 大夫士庶人祭禮 대부·사인·서인의 시제 등의 제례에 관한 지침 (『고려사』지17, 예5)

위 다섯 조목 중「형법지」①〈관리급가조〉는「형법지」내에서도 〈공식(公式)〉 분류 속에 편제되어 있다. 그 자체로 법제적 측면이 강한「형법지」가운데〈공식〉으로 분류된 것은 관련 내용이 제도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으로,〈관리급가조〉는 고려시대 급가제도의 기본 지침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연(年), 월(月), 주(週) 등의 주기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정기 급가에 대한 내용이 이 조목에 나타난다. 관리의 정기 급가를 법제 측면에서 보고 있는 점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휴일제도를 관리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형법지」의 ②〈금형조〉는 관리의 급가에 관한 규정은 아니지만 금형(禁刑)하는 시일에 대한 조목이므로 시간을 제도적으로 경영하는 측면에서 급가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이 조목은 〈관리급가조〉와 달리 '공식(公式)'이 아닌 '명례(名例)' 카테고리 내로 분류되었다. 「형법지」 전체에 깔린 법제적 의도와 더불어, '명례'가 뜻하는 예시라는 의미에서 보듯 제도의 세부사항 격의 지침으로, 곧 금형일 날짜 규정 예시이다. 〈금형조〉에 나타나는 금형일은 국기(國忌), 속절(俗節), 십직일(十直日), 신일(愼日)이며, 절일의 주기성과 관련해서는 속절의 구체적인 날짜와 개별 속절의 명칭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고려시대 세시 절일 구성의 구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금형조〉에 나타난 속절 전체가 〈관리급가조〉에 의한 급가일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조목은 고려의 속절 급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자료이다.

「예지」는 예(禮)로써 통치하던 전통시대에 법제와 같은 위상을 갖고

있었던 예제(禮制)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禮)는 동아시아 전통시대의 제도와 문화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고려시대 급가 문화 역시 예제적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예지」의 ③〈오복제도조〉, ④〈백관기가조〉, ⑤〈대부사서인제례조〉는 각각 친족의 상장례, 부모 기일 제례, 사대부의시제(時祭)에 발생하는 급가 지침에 대한 기록이다.

③ 〈오복제도조〉는 친족의 상장례를 당하여 망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다섯 종류의 상복을 다르게 입는다는 유교적 오복제도에 근거해 성립되었다. 망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복(服)은 더욱 험해지고, 급가일수는 더 많았다. 예컨대 가장 많은 급가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부모의상을 당해 3년 참최(斬衰)를 입을 때 100일간의 급가를 주는 것이었다. 조부모 상을 당해 1년 재최(齋衰) 복(服)을 할 시에는 30일 급가를 받을수 있었다. 기 오복제도에 연동되는 급가제도는 985년(성종 4)에 처음성립되어8), 이후로도 시대의 요청에 따라 꾸준한 수정ㆍ보완을 거치며 사회에 정착하였다.

④ 〈백관기가조〉의 급가는 백관에 대하여 부모와 조부모의 기일(忌日)에 1박 2일의 급가를 허용한다는 방식의 기가(忌暇)였다. 이때 조부모의 기일에 대한 급가는 본래 제주(祭主)인 아버지가 조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아버지를 대신해 손자에게 허용되었다. 기가제도의 성립 시기는 981년(경종 6)으로 오복제도 기가보다도 4년 앞서며》, 기록에 나타나는 고려시대 급가제도 중에서는 가장 연원이 오래된 것이다.

⑤ (대부사서인제례조)는 1048년(문종 2)에 만들어진 시제(時祭)에 주어지는 급가제도를 말한다. 문종대의 시제 급가는 모든 관리에 대해 시중월(四仲月) 시제를 지내도록 급가 2일을 주는 방식으로 성립된 예제적 급가였다. 10) 그러나 이 조목의 내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1390년(공양왕 2)의 개편은 여말선초 성리학의 융성을 보여주듯 가례(家禮)의 제사 대상을 증조부모로 올리고 봉사 대수에도 신분에 차별을 두어 대부 이상 3대, 6품 이상 2대, 7품 이하 서인은 1대 봉사를 하도록 하는

^{7) 『}고려사』 지18, 예6, 凶禮, 五服制度. "斬衰. 三年, 給暇百日. [···] 齋衰. 齋衰周年, 給暇三十日"

^{8) 『}고려사』 지18, 예6, 凶禮, 五服制度. "成宗四年. 初定此制."

^{9) 『}고려사』 지18, 예6, 凶禮, 百官忌暇. "景宗六年十二月 制, 父母忌日, 依書儀, 一日兩宵 給暇."

^{10) 『}고려사』 × 317, 예5, 吉禮小祀, 大夫士庶人祭禮. "文宗二年七月壬寅, 制大小官吏, 四仲 時祭, 給暇二日."

원칙을 골자로 하였다.¹¹⁾ 이에 따라 시중월 시제 시에도 증조부모까지 봉사하고 1-2품은 시중월 상순에, 3-6품은 중순에, 7품 이하 서인까지는 하순에 지내도록 제일(祭日) 선택에서도 신분적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꾸려져 있다.¹²⁾ 이는 여말선초 성리학을 이념으로 삼고 가례(家禮)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는 새로운 시대를 예비한 예제적 정비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오복제도, 기가제도, 시제제도를 중심으로 한「예지」의 급가 규정은 모두 사가(私家)에서 행하는 유교적 의례에 대한 규정에 가깝고 이 세 조목의 시간관이 급가의 형태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고려 사회에 수용되어 있었던 예제적 급가제도의 모습을 전한다.

「예지」에 실려 있지는 않지만 예제적 급가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급가제도로 ①「형법지」의 〈관리급가조〉에 일종의 병가제도도 기록되어 있다. 1069년(문종 23)에 외관 본인과 처의 질병 시 병가를 주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관리급가조〉가 전하는 병가제도의 성립이다.13) 1088년(선종 5)에는 부모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들에게 급가를 주도록 하였고14), 1109년(예종 4)에는 참상원(麥上員) 이상에서 본인의 질병 치료에는 최대 100일을, 부모의 질병 치료에는 최대 200일을 주도록 하였다.15) 이처럼 고려의 병가제도는 본인은 물론 부모의 치병을 위한 급가일을 발생시킨다는 점이 오늘날 병가와는 다른 특징이었다. 또한 충목왕조의 기록은 부모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와 부모의 문안을 위해 필요한 급가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16) 고려시대 병가의 관념은 유교 예제적 성격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1) 『}고려사』 지17, 예5, 吉禮小祀, 大夫士庶人祭禮. "恭讓王二年二月, 判大夫以上祭三世, 六品以上祭二世, 七品以下至於庶人, 止祭父母."

^{12) 『}고려사』 × 17, 예5, 吉禮小祀, 大夫士庶人祭禮. "時享日期, 一二品每仲月上旬, 三四五六品仲旬, 七品以下至於庶人季旬. 八月庚申朔, 頒行士大夫家祭儀. 四仲月, 祭曾祖考妣, 祖考妣, 考妣, 三代, 嫡長子孫主祭."

^{13) 『}고려사』 지38, 형법1, 公式, 官吏給暇. "(文宗) 二十三年 判, "外官之妻, 在京身病者, 給暇三十日. 又外官身病者, 限百日給暇, 父母病, 三子俱爲外任者, 從父母願, 一子, 給暇二百日, 其餘子, 各給暇五十日, 其限滿者, 并解官.""

^{14) 『}고려사』 지38, 형법1, 公式, 官吏給暇. "(宣宗) 五年 判, "病親浴溫井者, 計程途遠近, 給暇.""

^{15) 『}고려사』 지38, 형법1, 公式, 官吏給暇. "睿宗四年 判, "參上員, 告病者, 旬旬給暇, 參外員, 據里典狀報, 大醫監看候, 給暇幷限百日, 父母病者, 限二百日.""

^{16) 『}고려사』 지38, 형법1, 公式, 官吏給暇. "(忠穆王) 判, "外任父母, 欲見其子, 除程途, 二十日給暇."

이상의 다섯 조목의 편제를 통해 절일 중심의 법제적 급가제도와 상장제례 중심의 예제적 급가제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시대 급가제도 전체상을 짐작할 수 있다. 예제적 급가는 대단히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바 시간 주기성과의 관련성은 매우 적지만, ① 〈관리급가조〉는 1년을 주기로 하는 정기급가체제를 말하고 있고, 후술하겠지만 1달 4주 체제의 급가제도도 담겨 있다. 이러한 급가의 주기성은 절일을 분절로 하여 순환하고 있었다.

절일을 분기점으로 시간이 흐르고 순환하는 천시론(天時論)은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시간의 사상이었다. 예컨대 당(唐)에도 관리에 대한 급가 지침이 있었다. 원정(元正)과 동지(冬至)를 한 해의 시작점으로 삼고 7일의 급기를 주어 강조점을 두는 등 절일을 중심으로 한 정기급가체제가 있었고, 시일에 따라 급가일수 조정을 통한 시간의 강약 조절을 주는 등의 방식이 정립되어 있었다. 17) 당의 급가제도가 정기급가 호일급가 · 예제급가 · 병가 등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고려의급가제도도 당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고려가 전면적으로 당의 제도를 수입하였다고만은 볼 수 없다. 특히 일상 시간의 리듬을 만드는 정기급가의 사례에서, 당은 10일 단위 순(旬)에 정기급가를 주었지만, ① (관리급가조)에 나타나는 고려의 정기급가 최소 주기는 삭망(朔望)과 상하현(上下弦)을 분절로 한 7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천시(天時)를 기리는 절일 급가 관념을 공유하는 가운데에서도 당과 고려의 정기급가 주기는 조금 달랐던 것이다. 고려의 급가제도는 동아시아적 천시론을 표방하며, 고려적인 생활 리듬도 그 안에 녹여내었던 것 같다.

고려의 정기급가제도는 24절기일을 비롯하여 월력 절일과 연간의 속절을 포함해 세시(歲時) 절일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그 바탕에는 동아시아천시(天時) 전통이 공유되었다. 즉, 고려의 절일급가제도는 천지의 응축된 기운과 감응하기 위한 인간의 제도로서 천시 절일에는 일상을 멈추고 가일(暇日)의 틈을 갖는다는 시간관의 발로이기도 하다. 고려의 정기급가는 절일 급가 형태로써 천시론을 지향하며 성립되어 있었다.

^{17) 『}당육전』 권2, 尚書吏部, 吏部尚書 侍郎, 吏部郎中 員外郎. "內外官吏則有假寧之節. 謂元正, 冬至各給假七日. 寒食通清明四日. 八月十五日, 夏至及臘各三日. 正月七日・十五日, 晦日, 春秋二社, 二月八日, 三月三日, 四月八日, 五月五日, 三伏日, 七月七日・十五日, 九月九日, 十月一日, 立春, 春分, 立秋, 秋分, 立夏, 立冬, 毎旬."

Ⅲ. 현망·절기 급가제도와 1월 4주 주기성

1. 현망·절기 급가의 월·주 주기성

『고려사』「형법지」의 〈관리급가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날짜나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처음 부분은 절일 명칭 위주로 하여 1년간의급가일을 아우르고 있으며, 다음 부분은 982년(성종 원년) 부모 기일급가의 시행을 시작으로 고려시대 급가제도 실행 사례와 변천의 연혁을기록해 두었다. 이 중 처음 부분에 기록된 연간 순환하며 반복되는정기급가에 관한 내용은 총 29개 절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8) 필자는사서의 편성이나 기록의 순서에도 나름의 서술 원칙이 있다고 보기에,『고려사』원문에 기록된 순서를 존중하여 〈관리급가조〉의 정기적 급가일을 급가 명목에 따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자료2-「형법지」 〈관리급가조〉의 고려시대 관리급가일

- ① 每月初一日·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每月入節日 一日
- ② 元正 前後幷七日,立春 一日,蠶暇 正月內 子·午日,人日 正月七日,上元 正月十五日 前後幷三日,燃燈 二月十五日
- ③ 春社 一日,春分 一日,諸王社會 三月三日,寒食 三日
- ④ 立夏 三日,三伏 三日19)
- ⑤ 七夕 一日, 立秋 一日, 中元 七月十五日 前後幷三日, 秋夕 一日, 秋社 社稷祭日, 秋分 一日, 授衣 九月初一日, 重陽 九月九日
- ⑥ 冬至 一日, 下元 十月十五日, 八關 十一月十五日 前後幷三日, 臘享 前後幷七日
- ⑦ 日・月食 各一日
- ⑧ 端午 一日, 夏至 前後幷三日

^{18) 『}고려사』 지38, 형법1, 公式, 官吏給暇. "每月初一日‧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 每月入節日 一日, 元正 前後幷七日, 立春 一日, 蠶暇 正月內 子‧午日, 人日 正月七日, 上元 正月十五日 前後幷三日, 燃燈 二月十五日, 春社 一日, 春分 一日, 諸王社會 三月三日, 寒食 三日, 立夏 三日, 七夕 一日, 立秋 一日, 中元 七月十五日 前後幷三日, 秋夕一日, 三伏 三日, 秋社 社稷祭日, 秋分 一日, 授太 九月初一日, 重陽 九月九日, 冬至一日, 下元 十月十五日, 八關 十一月十五日 前後幷三日, 臘享 前後幷七日, 日‧月食各一日, 端午 一日, 夏至 前後幷三日."

¹⁹⁾ 삼복은 원문상에 8월 보름인 추석 이후로 기록되어 있다. 말복이 孟秋인 7월에 들기는 하지만, 여름 절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여름 절일로 분류하 였다.

상기 분류는 절일의 성격별로 ① 정기급가, ② 정월(正月) 급가, ③-⑥ 봄·여름·가을·겨울 급가, ⑦ 일월식과 ⑧ 부가된 내용의 순서로 정리한 것이다.

① 매월 초1일, 초8일, 15일, 23일 및 매월 입절일 1일 급가 규정은 단순한 날짜의 배열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매월 초1일, 초8일, 15일, 23일은 각각 초하루, 상현, 보름, 하현을 가리킨다. 20) 우리가 달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일의 흐름을 분별하기 가장 좋은 단서가 무엇이었을지 상상해보면, 달의 모습을 근거로 삼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었을 것이다. 해의 움직임은 1년을 기준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이고 매일의 다름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달은 매일의 변화를 육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주기성을 가늠하고 초하루, 상현, 보름, 하현을 분기점으로 삼아 1달의 구성을 꾀했다는 점을 이 "每月初一日‧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 기록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매월 초1일, 초8일, 15일, 23일 규정을 보자. 매월 초1일·초8일 사이에 7일, 초8일·15일 사이에 7일, 15일·23일 사이에 8일, 23일·초1일 사이에 소월(小月)은 7일, 대월(大月)은 8일 간격이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음력의 1달은 30일인 대월과 29일인 소월의 두 종류로 구성되므로, 대월에는 급가일 사이에 7·7·8·8의 간격이, 소월에는 7·7·8·7일의 간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1달을 7일, 7일, 8일, 7일(8일)의 주기로 구분하는 시일의 분절을 초1일·초8일·15일·23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고려 사회는 1달의 첫날을 쉰 후 6일의 일상을 보내고, 다음

²⁰⁾ 심사과정에서 서금석·김병인의「역사적 추이를 통해 본 고려시대 '臘日'에 대한 검토」 (2014. 8)에서도 〈관리급가조〉의 초하루·8일·15일·23일 급가 대목의 날짜 배열이 대략 7일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주기가 나타나는 점이 포착되었음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서금석·김병인의 글은 이들 날짜가 현대천문학적으로 삭망과 상하현에 가깝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필자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바에 대해 살펴주신 점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필자 역시 박사학위논문 『한국 명절의 역사와 휴일의 변동 연구』(2014. 8)에서 〈관리급가조〉의 위 시일 배열에 내재된 현망 주기성 구조를 포착하였으며, 이에 착안해 역사천문학의 관점을 빌려 〈관리급가조〉에 나타난 현망 주기의 월력을 현대 달력 형태로 치환하여 이러한 리듬이 고려 사람들의 생활에 구현된 방식을 가늠해보았다. 두 논문이 비슷한 시기에 고려의 현망 주기를 주목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이 동시다발적・다각적으로 접근될 수 있었던 우연의 일치 그 자체도 유의미한 지점이라 생각한다.

하루를 쉬면서 2주차를 시작해 6일을 일했다. 3주차에는 하루 급가후 7일이 평일이었고, 4주차에는 하루 급가를 보내고 대월·소월에 따라 6일 또는 7일을 일했다. 기본적으로 1일 급가 후 6일을 평일로 보내는 7일 1주일 주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고려는 태음태양력을 썼고 이는 현행 그레고리 순태양력과 역사적 기원이 다른 역법이지만, 급가일과 평일 조직 면에서 1달 4주 7일 체계의 시일 운영방식이 고려와 현대가 유사하다는 점은, 적어도 고려의 시간문화가 현대 과학 문명의 독보적 진보성에 무색하게 체계적이었다는 인상을 준다.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성립된 급가일이〈관리급가조〉첫머리 "每月初一日‧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 구절이라면, "每月 入節日 一日"은 해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는 급가일이다. 입절일이 중국식 양력인 24절기의절일을 이르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每月初一日‧初八日‧十五日‧二十三日"은 삭망과 상현‧하현의 음력주기를, "每月 入節日 一日"은 24절기의 양력주기를 의미하므로, 이 두 내용을 종합한〈관리급가조〉의첫 번째 구절은 일월력의 조화를 통해 얻어지는 태음태양력 시간구조로파악된다. 그리고 이런 일월력 주기성을 바탕으로 하는 급가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급가일이기에, 고려시대의 정기 급가일이었다.

이 글에서는 삭망과 상하현 급가를 현망(鼓堂)급가로 표현하려 한다. 삭망은 유교적 삭망제(朔望祭)와 혼동의 여지를 주고, 상하현도 삭망만큼 이나 고려의 급가제도에서는 중요한 분절이기 때문에 삭망과 상하현을 조합한 현망 개념이 정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24절기일 급가는 절기급가로 칭하려 한다. 이처럼 고려의 정기급가는 현망과 절기의 일월력 두 축을 딛고 서 있었다.

월력 현망 주기를 특별한 시일로 여기는 인식은 고려 이전 시대에도 나타난다. 신라의 정월보름 연등회²¹⁾, 8월 보름 한가위가 그 사례이다.²²⁾ 신라에는 2월 8일부터 15일까지 탑돌이를 하는 복회(福會) 풍속도 있었 다.²³⁾ 아마도 8일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제시된 날짜가 아닌 듯하며 신라에서 상현일을 특정한 시일의 분절점으로 인식했음을 알려주는

^{21) 『}삼국사기』신라본기11, 정문왕 6년. "六年 春正月 [···] 十五日 幸皇龍寺看燈 仍賜讌百 용 "

^{22) 『}구당서』 권199, 열전149, 신라. "又重八月十五日, 設樂飲宴, 賚羣臣, 射其庭."

^{23) 『}삼국유사』感通7, 金現感虎. "新羅俗, 每當仲春, 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 競選興輪寺之殿塔為福會."

사례로 여겨진다. 신라에서 보름을 숭상했을 뿐 아니라 8일도 하나의 분절점으로 여졌다면, 8일부터 15일을 하나의 시간 주기로 삼았을 가능성 을 점쳐볼 수 있으며, 이는 현망의 시간 준거가 고려 이전부터 계승된 전통적 시간 인식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대목이다. 24) 월력 시간관이 삼국시대부터 전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일력 절기 시간관도 고려 이전 한반도에 일정하게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입춘과 입추 후 해일(亥日)·축일(丑日)·신일(申日)·진 일(辰日) 등에 선농·후농·풍백·우사·영성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25) 여기에 입춘과 입추 절기일이 주요 제사일의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중국의 24절기 전체 체계가 완전히 도입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신라에 절기 시간관이 수용되어 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신라는 당제(唐制)의 수용에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24절기 관념도 대략

이러한 절기 시간관은 신라나 고려의 고유한 시간 인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절기 시간관이 진한시대 중국에서 태동하여 성립된 중국식 태양력이기 때문이다. 24절기는 황도상에 나타나는 태양의 위치를 통해시간 마디로, 음력인 삭망과는 달리 양력 날짜이다. 24절기 중 연중해가 가장 높이 뜨는 하지, 가장 낮게 뜨는 동지, 낮과 밤이 같은 춘분과추분의 사계절 분지일(分之日)과 사계절의 시작일인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의 사립절(四立節)은 절기 시간관의 중요한 시간 마디이다. 이처럼 24절기 구조는 양력을 기반으로 하고, 사분지절과 사립절의 경우에서 보듯 사계절 구조에서 더욱 특화된다.

통일신라 시기에는 들어와 있었다고 추정해본다.

24절기로써 1년 4계절을 나누는 방법은 전한시대 『회남자(淮南子)』에서 그 기틀을 확립했다고 본다. 동지·하지·춘분·추분의 초보적인 관측에서 시작된 절기 관념이 『여씨춘추(呂氏春秋)』에서 팔절기로 정립되고, 이어 전한시대 『회남자』에서 24절기의 완전한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²⁶⁾ 진시황의 후원자인 여불위(呂不韋, ?-BC 235)의

²⁴⁾ 신라의 역법이 중국적 역법의 수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신라 역시 자체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서 신라적인 시간학을 구축하고 있었다. 김일권, 「신라 금석문과 「신라본기」의 천문역법사 고찰」, 『신라문화』 42(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13).

^{25) 『}삼국사기』 잡지, 제사. "立春後亥日,明活城南熊殺谷祭先農,立夏後亥日,新城北門祭中農,立秋後亥日,菻園祭後農,立春後丑日,犬首谷門祭風伯,立夏後申日,卓渚祭雨師,立秋後辰日,本彼遊村祭靈星."

²⁶⁾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2007), 240-242쪽.

『여씨춘추』는 그 골간에 해당하는 「십이기(十二紀)」에서 1년 12달을 8절기로 구조화하여 천자 천명론의 의미를 배합하였다. 천자의 권위를 천지의 천명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이런 사상은 천자의 중앙집권제를 사상적으로 지원하였다. 27) 또한 전한시대 회남왕 유안(劉安, BC 179-BC 122) 주도의 편찬물 『회남자』에 나타난 천인감응사상은 역시 천자를 중심으로 하여 한대(漢代)의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아 동아시아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28) 따라서 한반도의 양력 절기 시간관은 중국의 24절기론 수용 측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많다. 고려 이전부터 시작된 현망과 절기 시간관은 고려시대에 일월력적 절일 급가로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2. 현망·절기 정기급가의 1달 구조

고려시대에 1달을 7일과 8일 간격으로 주기성을 부여해 인식했다는 부분은, 근대에 들어서야 서구식 일력 7일 1주일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우리 문화에 1주일제가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의 통념과 상당히 다르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7일 주기 정기급가제도가 계승되지 않아 기억되지 않았을 뿐 고려시대에 이미 월력 1주일 관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고려시대 일월력 절일의 주기성을 현대 달력의 형식으로 치환해보면 표1과 같다. (관리급가조)의 기록이 월력 현망 급가일을 먼저 기록하였으므로 월력을 기본으로 하여 일력인 24절기를 표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또한 편의상 2015년 2월(음)을 사례로 하여 재구성하였다. 표1의 '윤일'은 1달 30일인 대월과 29일인 소월 차이에 따라 현망 3·4주차에 나타나는 7·8일의 탄력적 운영을 표현하기 위해 윤달에서 착안해 적용한 개념이다.

표1의 달력에서 보듯 고려의 1달은 4주로, 1주는 7일을 기본으로 주기성을 띠고 구조화되어 있었다. 현행 그레고리력 달력은 1주 7일의 4주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날짜들은 달마다 주(週)의 수를 달리하여 조정하지만, 고려의 달력은 1달 4주 체계를

²⁷⁾ 김근, 「해제-여불위와 『여씨춘추』」, 『여씨춘추』(글항아리, 2012).

²⁸⁾ 이석명,「해제」,『회남자』 1(소명출판, 2010), 16쪽.

표1-고려시대 월간 정기급가일 구조

주기	弦望 급가	평일					윤일	
 弦望 1주차	1일 (朔)	2일 月節급가 (춘분)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上弦)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弦望 3주차	15일 (望)	16일	17일 月中급가 (청명)	18일 (한식)	19일	20일	21일	22일
	2월연등 속절급가		한식 속절급가	한식 속절급가	한식 속절급가			
弦望 4주차	23일 (下弦)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고정하고 남은 일수 1일 또는 2일을 3주차와 4주차에 윤일 개념으로 삽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1달 4주가 고정되어서 주(週)의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식 월력 달력이 1월 4주 체계에 관한 한 더 구조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1달과 1주의 시작점에서 급가일을 두어 전월과의 분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말에 쉬는 현대의 달력과 조금 다른 점이다.

《관리급가조》에 나타난 매월의 정기급가제도는 고려 말엽까지도 잘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1375년(우왕 원년) 10월 김현이 "매월 가일(暇日) 강독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자 우왕이 강독이 정무 보는일은 아니니 중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⁹⁾ 김현이 말한 "매월 가일(毎月 暇日)"은 〈관리급가조〉의 매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정기 급가일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왕 원년 10월의급가일을 표2에서 다시 현대 달력의 형식으로 재편해보려 한다. 고려시대당시의 한 달 급가일 구조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파악해 보기 위해서이다.

^{29) 『}고려사』 열전46, 우왕1, 우왕 원년 을묘년 10월. "宦者金玄曰, "每月暇日, 宜停講." 禑曰, "讀書非視事, 何可廢也."

표2-1375년(우왕 원년) 10월의 급가일 구조 예시

주기	현망 급가일	평일					윤일	
현망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주차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양력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요일)	(목)	(금)	(토)	(일)	(월)	(화)	(全)	
급가	朔日 현망급가							
현망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2주차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양력	11/1	11/2	11/3	11/4	11/5	11/6	11/7	
(요일)	(목)	(금)	(토)	(일)	(월)	(화)	(수)	
급가	上弦 현망급가						立冬 월절급가	
<u>ы</u> /Г							下元 속절급가	
현망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3주차	신축	임인	계묘	갑진	을사	병오	정미	무신
양력	11/8	11/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요일)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1	望日 현망급가							
급가	下元 속절급가	下元 속절급가						
현망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4주차	기유	경술	신해	임자	계축	갑인	을묘	병진
양력	11/16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요일)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급가	下弦 현망급가						小雪 월 중 급가	

고려시대의 급가 인식은 조선 후기인 19세기까지도 일정하게 관습에 남아 있었던 것 같다. 1849년에 편찬된 홍석모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 에는 8일에 남자들이 외출하지 않으며, 궂은 일이 있으면 상현일과 하현일을 피한다고 하였다. 또한 5일·14일·23일을 '삼패일(三敗日)'이 라 하여 밖에 나가지 않았다고 전한다.³⁰⁾

^{30) 『}동국세시기』, 정월. "八日謬稱敗日. 八與敗華音同也. 是日男子不出門, 爲俗忌日. 按

8일은 상현일과 다름없으며, 상하현은 고려의 현망급가일과 일치한다. 홍석모의 삼패일 중 14일과 23일은 『고려사』 〈금형조〉의 십직일(十直日) 날짜 중 일부로, 삼가 근신한다는 삼패일의 신일(慎日) 인식은 고려의 정기급가일 및 금형일과 어느 정도 닮았다. 삼가 외출하지 않는다는 시일 인식은 집에서 쉰다는 급가일 인식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홍석모자신도 삼패일 관습을 고려적 연원으로 파악하고 있고, 고려의 급가일체제와 비교해보더라도 그가 전하는 조선 후기 상현·하현과 삼패일 인식은 고려적 관습의 유습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시간문화의 관성은 의외로 강한 전승력을 가지고 있다.

Ⅳ. 속절 급가제도와 1년 4계 계절성

1. 〈관리급가조〉의 연간 속절 급가체제

《관리급가조》는 일월력 절일 정기급가를 우선 기재하고 다음으로 정월의 급가를 꼽았다. 정월은 예나 지금이나 연간 세시풍속이 가장 풍성한 한 해의 첫 달이다. 자료2의 ② "元正 前後幷七日, 立春 一日, 蠶暇 正月內 子·午日, 人日 正月七日, 上元 正月十五日 前後幷三日, 燃燈 二月十五日"이 정월 급가 부분이다. 각각 설날(음 1월 1일) 전후 7일, 입춘 1일, 정월 자일(子日)·오일(午日)·인일(人日, 음 1월 7일)에 1일씩 급가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음력 정초인 설날과 양력 정초인 입춘에 모두 급가가 주어진 것을 통해, 태음태양력 세수(歲首) 개념도 확인된다. 일월력 절일을 모두 급가로 기리듯 한 해의 세수 역시 일월력 모두를 중시했던 모습이다.

②의 급가일 중 후반부 "上元 正月十五日 前後并三日, 燃燈 二月十五日" 은 정월 보름인 상원(上元)과 2월 보름에 행해졌던 연등회에 대한 급가 규정이며, 둘 모두 신년의 연등회에 대한 급가이다. 상원연등회는 고려시

高麗俗,以每月八日,婦女出遊城內外,故男子在家不出.此風訛傳,今俗作不宜出行日. 上弦下弦日,稱潮減日.每月人家,有拘忌事,必過是日,始相通涉,人物之有所忌者,亦 過是日而接之.初五十四二十三日,稱三敗日.每月忌百事,不敢動作,不宜出行.盖自麗 俗,以此三日,即君上所用之日,故臣民不用爲忌日云,本非敗日也."

대의 불교적 제천의례로서 고려 태조(太祖, 재위 918-943) 시기부터이미 대형 절일로 자리 잡고 있었다.31) 그러나 유교적 행정을 추구했던성종(成宗, 재위 981-997)이 불교적 상원연등회를 폐지하였다가 현종(顯宗, 재위 1009-1031)에 의해 2월 보름 연등회로 부활하였다. 이후 국왕의국기(國忌)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상원연등회와 2월 보름 연등회가 상호호환되곤 하였다.32) 전통시대 상원, 즉 정월 보름은 정월 신년 축일기간의 일부이자 마무리처럼 인식되었던 날이다. 2월 보름 연등회는상원 연등회와 상호 호환되었던 시간문화였으므로, 2월 보름도 정월신년 급가의 범주 안에서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관리급가조〉의 규정 ③-⑥ 및 ⑧은 사계절 급가 구조를 보여준다. ③ "春社 一日,春分 一日,諸王社會 三月三日,寒食 三日"은 음력 2월과 3월 봄 급가이다. '춘사(春社)'는 봄 사직제사일을 일컫는다.35) '제왕사회(諸王社會)' 날짜는 음력 3월 3일이며 역시 제일(祭日)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4) 춘분은 봄의 분지절이다. 입춘은 봄의 입절이며 세수의 의의도 가지는 절일이다. 한식은 동지로부터 105일째 날짜로 음력 2월 또는 3월에 드는 봄 절일이자 고려 태묘(太廟)의 제일(祭日)로,급가 일수 면에서도 설날과 납일 7일 연휴 다음으로 가장 긴 3일 연휴를 주는 고려시대 중요 절일이었다.

④ "立夏 三日, 三伏 三日" 및 ⑧ "端午 一日, 夏至 前後并三日"은 여름철 급가를 말한다. 여름의 입절 입하, 분지절 하지는 절기급가이며, 5월 5일 단오와 한여름 삼복은 모두 여름철 절일이다. 55) 입하, 하지에 3일씩

^{31) 『}고려사』세가2, 태조2, 태조 26년 하사월.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³²⁾ 현종 이후 2월 보름에 설행되던 연등회는 인종(仁宗, 재위 1122-1146)의 國忌가 2월에 들자 의종(재위 1146-1170) 시기부터 다시 상원연등회로 복귀했다. 그러나 최충렬의 건의로 2월 보름 연등회도 유지되었다. 그러다 신종(神宗, 재위 1197-1204)의 기일이 정월에 들면서 다시 2월 보름 연등회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고려의 연등회 시일은 정월 보름과 2월 보름이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가졌다. 상원연등회와 2월 연등회의 설행을 두고 고려에서는 '상원' 자체가 날짜 면에서 정월 보름보다 2월 보름에 가까웠다는 논의도 있다. 안지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61-64쪽.

³³⁾ 고려에서는 중춘 중추의 遠戊日을 사직제일로 하였다가 충렬왕 이후 중춘 중추의 上戊日(近戊日)로 변경하였다. 『고려사절요』충렬왕 원년 5월. "知太史局事伍允孚言, 國家, 嘗以春秋仲月遠戊日, 爲社, 按宋舊曆, 及元朝令曆皆以近戊日, 爲社, 自令, 請用近戊日, 從之."

³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국역 고려사』 19(경인문화사, 2011), 207-216쪽.

³⁵⁾ 보통 동아시아적 전통에서는 1년의 12월을 봄 1·2·3월, 여름 4·5·6월, 가을 7·8·9월, 겨울 10·11·12월로 구조화하곤 한다. 각 달에 주역의 괘기론을 붙이거나

급가를 주고 삼복에도 각 1일씩 총 3일 급가를 준 것을 보면, 여름철에는 타 계절보다 조금 더 휴식한다는 여름휴가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七夕 一日, 立秋 一日, 中元 七月十五日 前後幷三日, 秋夕 一日, 秋社 社稷祭日, 秋分 一日, 授衣 九月初一日, 重陽 九月九日"은 가을 급가이다. 칠석(음 7월 7일), 입추, 중원(음 7월 15일), 추석(음 8월 15일), 가을 사직제사일, 추분, 수의(음 9월 1일)³⁶⁾, 중양(음 9월 9일)은 가을 달인음력 7월부터 9월에 든다. 우란분재가 있었던 중원(中元)에 사흘 연휴가발생한 부분에서 불교와 도교 연원 절일을 중시했던 고려시대 사회상을 읽을 수 있다.

겨울 급가는 ⑥ "冬至 一日,下元 十月十五日,八關 十一月十五日 前後幷三日, 臘享 前後幷七日"에서 확인된다. 겨울 분지일 동지, 1년의 삼원(三元) 중 마지막인 하원(下元, 음 10월 5일), 대형 속절 팔관(八關, 음 11월 15일), 연말 제향일 납일[대한(大寒) 전후 가장 가까운 진일(辰日)]이다. 37) 하원과 팔관은 각 3일씩, 납일은 7일 연휴가 발생한 데 비해 동지는 하루에 불과하다. 조선시대에는 동지가 종묘 제일(祭日)로 크게 부각되는 데, 고려에서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성대한 축일 팔관과 동지의 시일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동지는 상대적으로 소박하

하도낙서의 상수 체계의 상징을 부여하여 의미론을 만드는데, 그 기원은 전한 선제(宣帝) 시기(재위 BC 74-BC 49) 인물 맹희(孟喜)와 경방(京房, BC 77-BC 37)으로 가늠한다. 특히 주역의 64괘상으로 1년 4계절, 12월, 24절기, 72후의 구조를 설명하고자했던 맹희의 업적이 선구적으로 파악되며, 전한과 후한의 교체 시기 즈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위건착도(易緯乾鑿度)』의 팔괘방위설 및 팔괘구궁설(八卦九宮設), 『여씨춘추(呂氏春秋)』「십이기(十二紀)」와 관련이 있는 명당구실도(明堂九室圖) 등은모두 괘상(卦象)과 수상(數象)이 지니는 음양오행론으로 절기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김일권은 이를 괘기적 우주론으로 파악하였다. 김일권, 「한대의 괘기역학과 24절기 태양력」,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2007).

³⁶⁾ 수의(授衣)는 추위를 대비해 옷을 만든다는 의미를 지닌 9월 절일이었다. 『시경(詩經)』 빈풍(豳風)에 9월에 옷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전하는데(『詩經』「國風」豳風. "七月流火,九月授衣.",註 "九月,霜降始寒,而蠶績之功亦成,故授人以衣,使禦寒也."),그 주에 "9월에는 서리가 내려 비로소 추워지고, 누에 치고 길쌈하는 일이 또한 이루어지므로 식구들에게 옷을 만들어주어 추위를 막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수의를 급가일로 별도 기술한 것은 절기상 아직 가을이지만, 겨울 계절의 시작을 대비하는 의의에서 특별한 날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37) 『}고려사』 세가9, 문종 35년 12월. "癸亥 知太史局事梁冠公奏, "奉宣勘進來壬戌年曆日, 並無疑誤. 惟臘日,自己未年以來,依大宋曆法,用戌日,臣未詳可否. 臣按陰陽書云,'近 大寒前後,先得辰爲臘',我國用此日久矣. 况古史曰,'夏曰嘉平,殷曰淸祀,周曰大蜡, 漢曰臘',其稱各異,皆以卒歲之功,因臘取獸,合聚萬物,以報百神,可不重歟? 不宜擅變 其法,請委有司詳定,然後施行.",制可."

게 치렀던 것 같다.

⑦ "日·月食 各一日"은 재이(災異)로 인해 정상 업무를 보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전통시대 일월은 곧 왕과 왕후를 의미했다. 일월식은 라후성과 계도성이 각각 해와 달을 갉아먹어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했기 에38), 왕과 왕후를 위협하는 중대한 변고로 여겨졌다. 때문에 이날은 관리들이 업무를 보지 않고 왕이나 왕후를 군례(軍禮)의 일종인 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를 통해 보호하는 데 힘썼다.39) 일월식에 발생하는 급가는 일종의 재난 상황을 일컫는 것으로 ①부터 ⑧의 급가일이 천기를 흠향하기 위한 절일 급가 의의를 지니는 것과는 반대의 의미에서 일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날이었다.

아울러〈관리급가조〉는 급가의 시일 구조와 함께 급가일수를 병기하여 급가 인식의 경중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를 남겼다. 첫째, 가장 긴 연휴는 7일로 지난해를 닫는 납일과 새해를 여는 정월 초하루의 연휴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한 해의 개폐(開閉)를 담당하는 문지기 절일을 가장 중시하였던 인식이 여기에서 엿보인다.

둘째, 7일 연휴 다음으로는 3일 연휴가 길었다. 연등회 행사가 대대적인 축제로 연출되었던 상원·2월 보름 연등회 및 팔관회의 불교적 절일, 상원·중원·하원의 도교적 삼원 절일은 상원연등회와 상호 연동되는 2월 보름 연등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3일의 연휴로 되어 있어 7일 다음으로 가장 긴 연휴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태묘의 제사일인 한식과

³⁸⁾ 김일권, 「고려시대 치성광불 천문도와 도불 교섭」,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고즈 원, 2008), 210-211쪽.

³⁹⁾ 구일월식의(救日月食儀)의 의례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당일 국왕을 곁에서 모시는 직책을 가진 신하들은 다들 검은 관과 흰옷 차림으로 국왕의 안부를 묻는다. 국왕이 흰옷을 입고 나와 교상(紋床)에 앉으면, 숭선(承宣)과 중방(重房)은 공손히 절을 하고 이것이 끝나면, 나누어 선다. 합문은 뜰로 들어와 곁걸음으로 가서 두 번 절한다. 행렬의 선두가 앞으로 걸어 나갔다가 자리로 되돌아가서 읍(揖)하고 왼쪽 가에 서면, 지후(祗侯)는 추밀을 인도하여 욕위(縟位)로 나아가게 한 후 곁걸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선다. 사인의 구령에 따라 두 번 절한 후 절이 끝나면, 나누어 선다. 국왕은 들어가 잠시 휴식한 다음, 시각을 기다렸다가 다시 나와 전에서 내려와 선다. 상사별감(尚舍別監)이 향을 피우면 국왕은 배례한 후 다시 전 위로 올라간다. 합문사(閣門使)가 추밀은 앉으라는 국왕의 분부를 전하면, 사인의 구령에 따라 추밀은 두 번 절을 한다. 합문사가다시 시봉원장(侍奉員將)도 앉으라는 국왕의 분부를 전하면, 사인의 구령에 따라 시봉원장은 두 번 절을 하고 제자리로 간다. 일식과 월식을 멈추게 하는 의례가 끝나면, 국왕은 전에서 내려오고 상사별감은 향을 피우며, 국왕은 다시 배례(拜禮)한다. 이것이 끝나면, 국왕은 다시 전 위로 올라 안으로 들어간다." 『고려사』지18, 예6, 軍禮, 救日月食儀.

표3-고려시대 〈관리급가조〉의 1년 급가체제

정기급가 대월 초1일, 초8일, 15일, 29일 각 1일 현망급가 대월 入節日 각 1일 절기급가 上元: 정월 15일 전후 3일 속절 燃煙: 2월 15일 1일 자름: 11월 15일 전후 3일 우란분재 두元: 10월 15일 3일 유로 전체 전후 3일 우란분재 두元: 10월 15일 3일 유로 전체 전후 3일 우란분자 두元: 10월 15일 3일 유로 전체 전후 3일 우란분자 두元: 10월 15일 3일 유로 전체	 구분		급가일	급가일수	비고	
변한 · 언등 변환 : 정월 15일 전후 3일 속절 변환 : 2월 15일 1일 전후 3일 수절 수절 가 # # # # # # # # # # # # # # # # # #	정기급가		-, -,	각 1일	현망급가	
避관·연등 燃煙: 2월 15일 1일 수절 1일 수절 1개월 15일 전후 3일 수절 수절 수절 가능. 7월 15일 전후 3일 수절 우란분재 두元: 10월 15일 3일 수절 기일 수절 이후 上戌日) 사지제사 취재 1일 (수품 遠戊日 (충렬왕 이후 上戌日) 사지제사 1일 (산동) 사진년 중도 1일 (선년 태동의 의미) 藤후 전후 7일 (선년 대동의 의미) 隆종 정월 주日, 두日 각 1일 (연일) 사리절 추分 1일 사립절 분지절 (천년 전후 3월 3일 1일 수절(上巳) 秦食 3일 수절 보지절 수절 보지절 수절 보지절 등록 3월 3일 1일 수절(上巳) 秦食 3일 수절 보지절 등록 2절 수절 보지절 등록 3일 사립절 등록 3월 3일 1일 수절(上巳) 秦食 3일 수절 보지절 등록 2절 수절 보지절 등록 3일 사립절 등록 3월 3일 1일 수절(上巳) 秦食 3일 수절 보지절 등록 5월 5일 1일 수절 보지절 등록 1일 사립절 등록 1일 사립절 등록 1일 사립절 등록 1일 사립절 등록 1일 수절 보지절 등록 1일 수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수절 보기절 1일 수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절 보기			매월 入節日	각 1일	절기급가	
지롱: 11월 15일 전후 3일 속절 수준 12			上元: 정월 15일	전후 3일	속절	
	팔관 -	· 연등	燃燈: 2월 15일	1일		
도교적 급가			八關: 11월 15일	전후 3일	속절	
下元: 10월 15일 3일 件審 遠戊日(충렬왕 이후 上戌日) 사자제사		. 771	中元: 7월 15일	전후 3일	우란분재	
지근에사 전년	上 亚	김 급가	下元: 10월 15일	3일		
전년	니지	וווד	春社	1일		
전년 변후 전후 7일 (신년 태동의 의미)	^124	1/11/	秋社	1일		
지표: 정월 초하루 7일 속절(연시)		전년	冬至	1일		
지正: 성월 조하두 /일 속실(면시) 鐵暇: 정월 子日, 午日 각 1일 慎日 사리절 五春 1일 사리절 春分 1일 보지절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日) 寒食 3일 수절 立夏 3일 사리절 慶至 전후 3일 분지절 二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秋 1일 사리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속절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10		臘享	전후 7일	(연말)	
AE: 정월 7일 1일 立春 1일 사립절 春分 1일 분지절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巳) 寒食 3일 수절 고夏 전후 3일 분지절 域무: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고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속절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겨울		元正: 정월 초하루	7일	속절(연시)	
A 1일 사립절 春分 1일 분지절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巳) 寒食 3일 소절 查夏至 전후 3일 분지절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속절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신년	蠶暇: 정월 子日, 午日	각 1일	愼日	
A 1일 분지절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巳) 寒食 3일 속절 고夏 3일 사립절 夏至 전후 3일 분지절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宏: 9월 초1일 1일 속절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人日: 정월 7일	1일		
본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巳) 寒食 3일 수절 ① 호夏 3일 사립절 夏至 전후 3일 분지절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① 한자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			立春	1일	사립절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巳) 寒食 3일 수절 ① ① ② ① ① ① ① ② ② ② ○ ○ ○ ○ ○ ○ ○ ○ ○ ○	ь	=	春分	1일	분지절	
여름 立夏 3일 사립절 夏至 전후 3일 분지절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속절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	=	諸王社會: 3월 3일	1일	속절(上巳)	
여름 夏至 전후 3일 분지절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宏: 9월 초1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寒食	3일	속절	
여름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夏	3일	사립절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立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속절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V4	2	夏至	전후 3일	분지절	
立秋 1일 사립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여듬		端午: 5월 5일	1일	속절	
秋分 1일 분지절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三伏	3일	초복, 중복, 말복	
가을 七夕: 7월 7일 1일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가을		立秋	1일	사립절	
水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秋分	1일	분지절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七夕: 7월 7일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秋夕: 8월 15일	1일	속절	
			授衣: 9월 초1일	1일		
재이 日月食 1일			重陽: 9월 9일	1일	속절	
	재	0	日月食	1일		

여름의 입절(입하), 분지절(하지)이 3일로 급가가 길었다. 이런 급가일의 시일 구조와 급가일수를 종합해 〈관리급가조〉에 나타난 고려시대 1년의 급가체제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2. 연중 속절 급가일과 사계 주기성

이상에서 관리급가제도의 연간 체제가 사계절 주기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관리급가제도의 급가일 중에는 속절로 분류된 절일도 포함되어 있다. 고려의 속절은 『고려사』「형법지」〈금형조〉의 '속절' 범주 안에 절일명과 날짜를 명시해 분류되어 있다. 다음은 〈금형조〉 의 내용이다.

자료3-『고려사』 〈금형조〉의 속절제도

- ① 國示
- ② 十直[初一日,初八日,十四日,十五日,十八日,二十三日,二十四日,二十八日,二十九日,三十日]
- ③ 俗節[元正, 上元, 寒食, 上巳, 端午, 重九, 冬至, 八關, 秋夕]
- ④ 慎日[歲首 子午日, 二月 初一日]

(금형조)는 이렇게 네 가지 금형 시일의 인식을 병렬하면서 속절도다루었다. ① 국기(國忌)는 왕과 왕비의 기일을 의미하며, ② 십직(十直)은불교적 십재(十齋)와 유사어로 파악되고 있다. 40) ③ 속절은 동아시아적절일과 대비하여 고려적 전통을 담은 절일로 이해된다. ④ 신일(愼日)은문자 그대로 삼가는 날로 2월 초하루를 제외한 정월 자일(子日)과 오일(午日)은 〈관리급가조〉에는 '잠가(蠶暇)'로 포함되어 있다. 41)

⁴⁰⁾ 중국의 당나라에 십직일(十直日) 제도가 있었는데, 십직일은 재계(竇戒)를 올리는 일이 므로 살상 및 사형을 금하였다(『唐律疏議』권30, 斷獄28, 立春後秋分前不決死刑). 十直日은 천상의 태일이 지상에 내려와 사람의 선악을 판단한다고 하는 도교적 명진재일 (明眞齋日) 연원이 전한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한국고전용어사전』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963쪽).

⁴¹⁾ 정월(正月) 첫 자일(子日)과 오일(午日), 2월 초하루가 신일(慎日)에 해당된다. 정월 자일과 오일을 신일로 삼은 유래는 대개 삼국시대 신라의 풍습에서 연원을 찾는다. 정월 첫 해일(亥日), 자일(子日), 오일(午日)에 매사에 삼가고 15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약밥을 만드는 풍습이 그것이다(『삼국유사』紀異1, 射琴匣). 2월 초하루는당 덕종 대에 성립되었다고 전해지는 삼영절의 하나가 따로 신일에 분류된 것으로보인다.

① 국기와 ④ 신일은 매사 삼가는 날을 만나 형벌조차도 꺼려 금형하려는 시간의 인식이고, ② 십직은 불교 제의를 행하는 날로서 종교적시간 인식이다. 이런 가운데 ③ 속절은 고려의 전통 절일 관념으로생각된다. 속절의 시일이 중국의 24절기 시간 마디와 일치하지 않고, 팔관과 추석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적 연원이 잘 두드러지지 않는 한반도적 전통의 절일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원정(元正, 음 1월 1일), 상원(上元, 음 1월 15일), 상사(上巳, 음 3월 3일), 단오(端午, 음 5월 5일), 중구(重陽, 음 9월 9일), 동지(冬至)는 모두 중국에서도 절일이다. 그러나 반드시 중국의 절일이 고려로 유입되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신라의 추석⁴²⁾, 고구려의 3월 3일 제천전통 사례처럼⁴³⁾ 고려 이전 한반도에 절일 관념이 있었고, 마한의 5월 제사에서 보듯⁴⁴⁾ 절월(節月) 관념도 있었다. 이러한 시간의 전통이 중국에서 유래한 양수 중복 날짜에 대한 선호 등의 의미론이 중첩되고, 시일의인식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다듬어져 고려의 전통 절일 속절로 성립되었을 것이다.

5월 5일 단오도 중국과 고려의 절일 인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중국의 단오는 멱라수에 빠져 죽은 초나라 굴원의 혼을 달래기 위해 만두를 빚어 강에 던졌다는 설화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그러나 한국의 단오는 한국적 전통에서 삼국시대부터 5월 파종기에 행해지는 농경제의이자 제천의례로 성립되어왔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단오의 위령제적 성격이 한국적 단오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45) 또한 마한에서 5월 제의(祭儀) 시간관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고려시대 단오의 제도적 성립이 전적으로 중국 문물의 수입에 의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반도에 전승되어온 전통적인 5월 제의(祭儀) 시간관에 중국에서 유래한 양수(陽數)의 복합이라는 상수학적 의미와46) 단오의 명칭이

^{42) 『}삼국사기』 신라본기1, 儒理尼師今. "九年, […] 王旣定六部, 中分為二, 使王女二人各率部內女子, 分朋造黨, 自秋七月旣望, 每日早集大部之庭, 績麻乙夜而罷, 至八月十五日, 考其功之多小, 負者置酒食, 以謝勝者, 於是, 歌舞百戲皆作, 謂之嘉俳, 是時, 負家一女子, 起舞歎曰會蘇, 會蘇, 其音哀雅, 後人因其聲而作歌, 名會蘇曲."

^{43) 『}삼국사기』 잡지1, 祭祀. "高句麗常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獲猪鹿, 祭天及山川."

^{44) 『}晉書』권97, 열전67, 馬韓. "俗信鬼神, 常以五月耕種畢, 羣聚歌舞以祭神. 至十月農事 畢亦如之."

⁴⁵⁾ 김명자, 「韓·中 단오 유래설과 관련 세시」, 『남도민속연구』 14(남도민속학회, 2007), 10-17쪽.

⁴⁶⁾ 최진묵은 우주와 만물의 형성과 변화를 숫자로 해석해 의미를 부여하는 중국 고대

결합되어 고려의 5월 5일 단오 속절로 종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이다.

속절은 언뜻 명절과 대비해 명절에 대한 하위 관념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正)/속(俗)의 교화적 이분법은 성리학에 바탕을 둔 관념으로, 불교를 시대의 사상으로 삼았던 고려시대에 대하여 조선시대를 풍미한 성리학적 정속 관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 '절(節)'은 그 자체로 이미 절일의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었으며, '속(俗)'은 '전통적'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절일'과 '속절'은 대등한 자격을 가지고 급가제도 내에 공존할 수 있었다. 고려의 속절은 중국 유래와 한반도 유래 절일의 다름을 구분하여 한반도적 전통의절일을 별도 지칭하기 위한 용어였을 것이다.

고려의 9대 속절 원정, 상원, 한식, 상사, 단오, 추석, 중구, 동지, 팔관은 대체로 삼국시대부터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절일이었다. 마한 5월 제사 전통과 관련지을 수 있는 단오, 신라 전통의 추석,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시일인 세수 절일인 원정은 중국적 절일 관념의 보편화 이전에도 한반도의 전통 절일로 성립되어 있었다. 상원의 경우는 고려 태조의 명에 의해 국가적 규모의 연등회를 개최하였듯 고려의 주요 절일이었고, 팔관은 고구려의 동맹과 관련이 깊다. 한식은 태묘의 제사일 로 급가도 3일이 주어지는 고려의 핵심적인 국례(國禮) 시일이었다.

나머지 상사, 중구, 동지 중 동지는 중국의 24절기일이고 이날 팥죽을 먹어 벽사하는 풍속도 중국과 공유하는 지점이 많다. 또한 동지는 음기가 가득한 가운데 일양(一陽)이 생겨나 새로운 기운의 시작을 알리는 지뢰복(地雷復)괘의 의미로 해석되는 점도 대략 비슷하다. 동지부터 태동한 양의 기운이 삼양(三陽)을 이루며 본격적인 새해를 연다고 여겨진 원정과함께 동지는 고려에서도 세수 절일로 중요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려의 속절은 명칭과 시일 측면에서 중국적 영향을 받았지만, 삼국시대에 존재했던 한반도 절일 전통의 계승 측면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고려의 전통 절일 속절에는 춘추·동하계 계절성도 나타난다. 첫째, 춘추 관념은 영절(令節)로 불렸던 상사(上巴)와 중구(重九)에서 주목된다.

상수학의 전개를 설명하며, 홀수는 양수(陽數)로서 천(天)을, 짝수는 음수(陰數)로서 지(地)를 의미하게 되는 과정을 정밀히 분석하였다. 최진묵, 「수자의 체계와 생활」, 『漢代 數術學 研究: 漢代人의 天·地·人 理解와 그 活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고려시대 영절의 기록은 조준(趙浚, 1346-1405)이 한식(寒食), 상사, 중구를 삼영절(三令節)로 칭하였다는 대목에서 발견할 수 있다. 47)이 밖에 영절 관련 내용이 고려시대 사료에 두드러지지 않아 조선시대의 자료를 빌려 추정해보면,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이 3월 3일과 9월 9일을 영절(令節)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48)영절은 당(唐) 덕종(德宗, 재위 780-805)이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정월 그믐 중화절(中和節)을 2월 초하루로 옮기고 상사와 중구를 포함하여 삼영절로 하여 1일 급가를 준 데에서 연원을 찾는 절일 관념이다. 49)여말선초의 성리학자인 조준이한식을 조상에 성묘하는 절일로 칭송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성리학적이념이 삼영절 인식에 영향을 준 것 같고, 중화절이 생략된 부분으로 볼 때 중국의 농사 절기와 관련된 중화절은 고려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唐)에서도 영절은 제도성을 띤 축일 관념이었고, 상사와 중구가 여말선초까지 영절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 두 속절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제도적 축일이었을 것이다. 중구(重九)는 경령전(景靈殿) 제일(祭日)이기도 하거니와, 고려 초기 광종(光宗, 재위 949-975)대에도 국왕이 중양절 연회를 베풀었다고 전한다. 50) 1069년(문종 23) 상사에는 개별적인 답청뿐 아니라 국왕의 주재로 대대적인 답청을 실시했던 기록이 제도적 축일로서 상사의 일면을 전한다. 51) 1111년(예종 6)에는 국왕이 연회를 베풀고 활쏘기 대회를 하였다고 하며52), 1209년(회종 5)에는 최충헌의 주재로 수박(手摶) 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있다. 53) 이를 통해 사사로운 답청(踏青)과 등고(登高) 정도의 규모보다 큰 국가적 수준의

^{47) 『}고려사』 열전31, 趙浚. "每歲三令節寒食,上填之禮, 許從俗禮, 以厚追遠之風, 違者以不孝論."

^{48) 『}세종실록』세종 11년 8월 24일, "以三月三日, 九月九日爲令節, 俾諸大小臣僚, 中外士民, 各當其日, 選勝地遊樂, 以形容太平之氣象."

^{49) 『}舊唐書』 刊13, 본기13, 德宗 下."五年春正月壬辰朔, 乙卯, 詔:四序嘉辰,歷代增置, 漢崇上已,晉紀重陽 […] 自今宜以二月一日爲中和節,以代正月晦日,備三令節數,內外官司休假一日."

^{50) 『}補閑集』 권上"又有重陽讌御製, 走筆頌美詩. 以此知光廟, 弄翰捷疾, 煥乎有文."

^{51) 『}고려사』세가8, 문종 23년 3월 기사일. "三月 己巳 幸興王寺, 登南峯禊飲, 製上巳詩, 命侍臣和進."

^{52) 『}고려사』 세가13, 예종 6년 9월 기사일. "設重陽宴, 王賦詩, 令從臣和進."; 무인일. "命侍從官射, 中的者, 賜物有差, 仍賜宴."

^{53) 『}고려사절요』 희종 5년 9월. "秋九月 崔忠獻會賓客 設重陽宴 使都房有力者手搏 勝者 授校尉除正 以賞之."

제축일(祭祀日)이 고려의 상사와 중구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3월과 9월에 대회(大會)를 여는 전통이 있었다. 고구려에는 3월 3일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 지내는 전통이 있었다. 54) 또한 『삼국사기』에 따르면, 유리왕(琉璃王, 재위 BC 19-AD 18)부터 대무신왕(大武神王, 재위 18-44), 태조왕(太祖王, 47-165), 산상왕(山上王, 197-227) 시기까지 4건의 9월 사냥 기록이 나타난다.55)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도 고구려에 왕이 직접 주관하는 춘추 사냥대회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56) 이는 3월과 9월의 제천(祭天)적 사냥대회를 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에서 영절(令節)이 중화절이 빠진 채 춘추의 상사와 중구로 굳어진 것은 한반도 자기 전통이나 생업환경과는 다소 다른 중국적 중화절은 낯설고, 고구려부터 전통을 가지고 내려온 상사와 중구의 춘추 축일 관념은 사회에 폭넓게 수용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속절에 투영된 동계·하계의 계절성에 대해서는 보름밤 축일이성대하였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 고려의 9대 속절 중 보름 날짜에 드는 속절은 상원(음 1월 15일), 추석(음 8월 15일), 팔관(음 11월 15일)의세 가지이다. 상원은 정월에 들어 맹춘(孟春)에 해당하지만 계절감각으로는 아직 동계에 머무르는 때이다. 추석은 신라 전통의 경령전 제일(祭日)이고, 계절적으로는 중추(仲秋)의 가을 절일이다. 팔관은 맹동(孟冬)의 절일이며 계절적으로도 매우 춥고 동지에 가까워 밤이 길다.

농업이 주요 생업 수단이었던 전통시대에 추수를 마무리 짓고 난겨울철은 농한기여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계절이었다. 동계상원과 팔관의 보름밤 축일 관념도 그런 생업환경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고려의 속절 중 신년 세수 대표 절일인 원정과 연말의 대표절일 납일이 각각 7일 연휴로 고려에서 가장 긴 급가일수가 지정되어 있었던 것도 세수의 의의에 더해 농한기라는 계절적·생업적 특수성도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54) 『}삼국사기』 권45, 열전5, 온달. "高句麗, 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55) 『}삼국사기』고구려본기1, 유리명왕 24년; 『삼국사기』고구려본기2, 대무신왕 3년; 『삼 국사기』고구려본기3, 대조대왕 55년: 『삼국사기』고구려본기4, 산상왕 3년

^{56) 『}北史』 권94, 열전82, 고구려. "及春秋校獵, 王親臨之."; 『隋書』 권81, 열전46, 고구려. "毎春秋校獵, 王親臨之."

1038년(정종 4)의 2월 연등회 기록은 "관등하는 날 저녁에 반드시 초상을 모신 궁전에서 친히 분향을 하였는데 이것을 상례로 삼았다"고 한다.⁵⁷⁾ 저녁 무렵 왕의 분향으로써 연등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연등회는 불을 밝힌 연등이 중심이 되는 행사이므로 시간관 면에서는 밤이 핵심이다. 또한 위의 정종대 기록에서 연등회의 시작 시점이 밤이 시작되는 저녁으로 인식됨을 본다. 이를 통해 보름밤을 중심으로 한 상원연등회와 팔관회 역시 밤 축일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한다.

이처럼 실질적인 계절의 감각을 따라 고려의 연간 속절 시일 구조를 보면, 크게 동계와 하계로 분류할 수 있다. 9대 속절 중 동지(음력 11월), 팔관(음력 11월), 원정(음력 1월), 상원(음력 1월)은 동하계 2분기법에 의해 동계 속절로 아우를 수 있으며, 동지를 제외하고는 팔관 3일, 원정 7일, 상원 3일로 연휴가 다른 계절 절일에 비해 길었다.

고려의 속절은 기본적으로 1년을 주기로 하여 순환하는 체계이다. 그리고 춘추의 영절이나 동계 야간 축일 인식을 통해, 중국의 24절기가 완벽한 1년 4계 12달의 구조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교하지는 않더라도, 고려의 속절도 사계의 계절성과 일정 정도 연동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고려 속절의 계절성은 신년의 의미와 동계의 계절성을 동반하는 1월의 원정과 상원, 봄의 제축일인 한식과 상사, 여름철 단오, 가을 제축일인 추석과 중구, 겨울 속절 동지와 팔관 정도로 분류될 수 있다.

이처럼 고려의 9대 속절은 동계·하계 2분기법과 춘하추동 4분기법에 의한 계절성을 포괄하며 1년을 순환하였다. 그리고 이때 계(季) 관념은 일력 중심으로, 연(年) 관념은 일력 동지와 월력 원정의 이중 세수 인식에서 나타나듯 일월력의 조화를 지향하였다. 이에 고려 세시의 1년 4계 12월 구조와, 해당 월의 24절기일 및 속절을 정리하고, 각 절일의 급가일수를 부기하여, 고려시대 1년과 4계 주기성을 바탕으로 순환하는 1년 세시의 절일 구조를 표4로 구성하였다.

^{57) 『}고려사』세가6, 정종 4년. "二月 癸未 燃燈, 王如奉恩寺, 謁太祖眞. 燈夕, 必親行香眞 殿以爲常."

표4-고려의 계절별 월별 세시 구조

$\overline{}$	월	1월	2월	3월
계절	=	<u>'</u> '결		<u> </u>
계골	$\overline{}$			<u> </u>
	節日	입춘, 우수 [가 19] 크기]	경칩, 춘분 [7] 10] 그기]	· ·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春		〈연시〉		
		正祖(1. 1)	寒食(동지 후 105일)	
	祭日	[7일 급가]	[3일 급가]	
	3	1년의 開門	태묘 祭日	
		신년하례	성묘일	
		경령전 祭日		
		上元(1. 15)	2월 보름	上巳(3.3)
	祝日	[3일 급가]	[1일 급가]	[1일 급가]
		연등회	연등회	봄 令節 축일
	월	4월	5월	6월
계절			하계	
	200円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節日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端午(5.5)	
			[1일 급가]	
夏	祭日		경령전 祭日	
			성묘일	
				*祭祝日 외 급가:
	祝日		단오: 여름 축제	6-7월 사이 삼복에 각각
	-INCH			1일 급가
$\overline{}$	L 월	7월	8월	9월
계절	\	· =	 하계	- =
	l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 상강
	節日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祭日		秋夕(8. 15)	重九(9.9)
			[1일 급개	[1일 급가]
秋			경령전 祭日	경령전 祭日
			성묘일	30E MI
		* *祭祝日 외 급가	U	
	祝日	中元(7. 15) 3일 급가		重九: 가을 令節 축일
$\overline{}$	월	10월	 11월	 12월
계절	\"	·~=	동계	·-e
-12	l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冬	節日	[각 1일 급가]	[각 1일 급가]	, [각 1일 급가]
		11	동지 [1일 급가]	
	祭日		신년하례	
	祝日			〈연말〉
-		*西京팔관회(10, 15)		^{\근르/} 臘日(大寒 전후 기장 근접
		별도 급가일 없음	팔관회(11, 15)	顧마(大孝 전후 기명 근접 한 辰日)
		*祭祝日 외 급가	[3일 급가]	안 底印 [7일 급가]
		下元(10, 15) 3일 급가		
		_	교리그기즈〉 드이 기로은 F	1년의 閉門

^{*} 이 표는 『고려사』〈관리급가조〉 등의 기록을 토대로 필자가 작성한 것임.

V. 맺음말

고려의 급가제도는 매우 간결하게 급가일 날짜와 급가일수를 열거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교적 상장제례에 관한 급가제도는 그 내력까 지 비교적 소상히 전하기 때문에, 절일에 대한 급가제도는 상대적으로 더욱 요점만 정리된 것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 조목에 기재된 급가일의 명목과 구조 분석을 통해 고려의 급가제도가 동아시아적 천시론을 담아 구조적으로 짜인 절일 체계를 기리고자 하였고 그에 연동하는 정기 급가제도를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고려시대 절일 급가는 현망(弦望)과 24절기일을 분절로 하여 1년, 4계, 12달, 48주 주기성을 가진 체제로 성립되어 있었다. 당시의 주기성은 태음태양력을 기본으로 하고 48주가 월력에 따라 반복되었고, 48주 체제는 마치 일력 기본인 오늘날 달력의 주기성과도 흡사했다.

속절은 1년을 주기로 드는 전통 절일로 파악되며, 춘하추동과 하계동계의 계절 주기성을 띠었다. 농한기인 동계 보름밤에 3일 밤낮 펼쳐졌던 연등회 축일 문화도 고려 속절의 인상적인 부분이다. 고려시대 9대속절이 조선시대까지도 정치적 이유로 중단된 팔관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세시 시일 구조가 고려의 속절에서 기틀을 형성하였다는 대목도 엿볼 수 있었다.

당대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을 시간의 바탕에 새겨 연간 순환하는 급가체제로 운영하는 고려의 급가 시간관은 오늘날의 공휴일 관념과 매우 유사하다. 고려에서는 천인감응의 천시론을, 오늘날에는 민족 정체성을 담은 것이 다를 뿐이다. 생활 주기의 분절에 담겨진 의미론은 그 주기가 반복될 때마다 되풀이 기억된다. 일상을 중단하고 틈을 갖는 급가는 그런 기억을 한층 강화한다. 고려시대 천시론은 급가가 만드는 시간의 분절마다 되풀이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시대의 가치였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고려의 급가제도 분석에 집중하여, 고려가 제도의 모본으로 삼았던 당(唐)이나 요(遼)·금(金)·원(元) 등 고려 당대 중국과의 비교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는 차후에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런 한계가 있음에도 급가제도를 통해 일상생활의 리듬 형성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주기성을 재구성한 점은 고려시대 생활문화의 일면을 이해하는 데 다소나마 기여한 바가 있다고 믿는다.

참 고 문 헌

- 『經國大典註解』(정긍식 외,『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 『高麗史節要』[김종서(朝鮮 金宗瑞, 1383-1453),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고려사 절요』 1-5, 민족문화추진회, 1977].
- 『高麗史』(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국역 고려사』, 경인문화사, 2006-2011).
- 『舊唐書』[유구(後晉 劉昫), 885 추정-951 추정, 945 편찬].
- 『唐六典』(738 편찬, 김택민 외 역주, 『역주 당육전』상-하, 신서원, 2003-2008).
- 『東國歲時記』[홍석모(朝鮮 洪錫謨, 1781-1857), 국립민속박물관 편, 『조선대세시기』 Ⅲ, 국립민속박물관, 2007].
- 『補閑集』[최자(崔滋, 1188-1260), 『보한집』, 계명대학교출판부, 1984].
- 『北史』[이연수(唐 李延壽), 7세기 무렵].
- 『三國史記』[김부식(高麗 金富軾, 1075-1151), 이병도 역, 『삼국사기·삼국유사』, 두계학술재단, 1999].
- 『三國遺事』[일연(高麗 一然, 1206-1289), 이병도 역, 『삼국사기·삼국유사』, 두계 학술재단. 1999]
- 『隋書』[장손무기(唐 長孫無忌) · 위징(唐 魏徵) 등, 636 편찬].
- 『詩經』(차주환 외 역, 『사서삼경』, 을유문화사, 2001).
- 『呂氏春秋』[여불위(秦 呂不韋, ?-BC 235), 김근 역, 『여씨춘추』, 글항아리, 2012]. 『晉書』[방현령(唐 房玄齡), 578-648, 644 편찬].
- 『淮南子』[유흠(前漢 劉歆, BC 53?-25), 이석명 역, 『회남자』, 소명출판, 2010].
- 김명자, 「韓·中 단오 유래설과 관련 세시」. 『남도민속연구』 14, 남도민속학회, 2007.
- 김일권, 『동양 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2007.
- _____, 『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2008.
- 김택규,『韓國農耕歲時의 硏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85.
- 서금석·김병인, 「역사적 추이를 통해 본 고려시대 '臘日'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 보』 56, 고려사학회, 2014. 8.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한국고전용어사전』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 안지원, 『고려의 불교의례와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11.
- 이두현, 『韓國民俗學論考』 학연사, 1984.

- 이희덕, 「고려시대의 천문관과 유교주의적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7, 한국사연구 구회, 1977.
- 임동권, 『韓國歲時風俗研究』. 집문당, 1985.
- 조선총독부 편,『朝鮮の年中行事』. 조선총독부, 昭和 10年(1935).
- 최남선, 「조선상식」. 《매일신보》, 1937.
- _____, 『조선상식 풍속편』. 동명사, 1946.
- 최상수, 『韓國의 歲時風俗』. 홍인문화사, 1960.
- 최진묵, 『漢代 數術學 研究: 漢代人의 天·地·人 理解와 그 活用』.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하수민, 『한국 명절의 역사와 휴일의 변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고려사』의〈관리급가조〉는 고려시대의 급가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기본 지침이다. 중국의 당제(唐制)에도 관리의 급가제도가 있었고, 그 편성이 고려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당(唐)의 정기급가는 열흘인 순(旬)을 주기로 순환해 고려와 달랐다. 고려의 정기급 가일은 삭망과 상하현의 현망(弦望)일과 24절기일을 중심으로 한 1달 4주(週) 체제에서 주기성이 두드러지며, 세시(歲時) 표현에 담긴 1년 시간관념이 말하듯 속절도 1년을 바탕으로 순환하는 주기성을 띠고 있었다. 이에 현망, 절기, 속절 급가의 주기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월 1일·7일·15일·23일의 현망일을 분절로 순환하는 현망급가는 7일을 기본으로 하는 주기성을 형성했다. 대월(大月)에는 3·4주차에, 소월(小月)에는 3주차에 윤일을 적용하여 7일 1주 체제로 인해 남는시일도 1달 구조에 안착하게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월력을 기반으로하여 매월과 매주의 첫머리에 쉬는 날을 두었다.

둘째, 절기급가는 연 24회 순환하는 중국식 양력 기반 급가였다. 태음태양력의 명칭 자체로도 알 수 있듯 동아시아 역법은 일월력을 동시에추구했고, 절기는 일력이었다. 고려의 급가에서도 현망이 월력을, 절기일이 일력을 담당해 1달 내에 현망급가 4일, 절기급가 2일이 드는 것이보통이었다.

셋째, 속절(俗節)은 고려 이전부터 전해온 전통 절일로 파악되었다. 고려의 9대 속절은 원정(元正), 상원(上元), 한식(寒食), 상사(上巳), 단오(端午), 추석(秋夕), 중구(重九), 동지(冬至), 팔관(八關)이었으며, 모든 속절에는 급가가 부여되었다. 세수(歲首)인 원정(元正)에는 가장 긴 연휴인 7일이, 보름밤 연등회가 성대했던 상원과 팔관과 태묘의 제일(祭日)이었던 한식에 3일이 주어졌다. 다른 속절은 모두 1일을 쉬었다. 농한기인동계 속절에 더 긴 연휴가 부여된 점이나 세수 및 춘하추동에 골고루속절이 드는 점 등에서 속절의 춘하추동・하계동계 계절성을 엿볼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고려 사회에는 1년 4계 12달 48주의 주기성을 가진 시간의 리듬이 있었다. 고려 정기급가의 1달 4주 주기성은 현대 양력 달력에서 보는 주(週) 인식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고려의 속절은 오늘날 세시 시일 구조의 기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고려의 급가제도는 동아시아 전통의 천시론을 바탕으로 현망의 월력 문화를 녹여 낸 천시론 적 급가제도였다.

투고일 2014, 12, 23,

심사일 2015. 1. 26.

게재 확정일 2015. 2. 10.

주제어(keyword) 절일(節日, 24 seasonal divisions), 속절(俗節, traditional holiday), 급가(給暇, day-off), 휴가(休暇, vacation), 천시(天時, cosmological time), 사시(四時, four seasons), 일주일(週. week)

Abstracts

Cosmological Vacation System of Goryeo and its Year-Season-Month-Week Periodicity

Ha, Su-min

The official history of Koryoe Koryoe-sa(高麗史) records Kingdom of Koryoe had structural day-off system which came every 4 quarters of a lunar month(弦望 日). And there were 24 seasonal divisions of a solar year(節氣日) in ancient China that usually came twice a lunar month. The 24 days were another part of Koryoe's day-off system that completed regular vacation system.

The 24 divisions(節氣) were considered very important because seasonal energy of the universe was thought to be condensed at these days. This was part of what ancient Chinese called Cosmological Time(天時). Koryeo's vacations reveal that it shared the idea of Cosmologic Time of East Asian culture thus organizing it to be a part of the nation's time managing system. Thang dynasty(唐) of China also had holiday-vacations and this might have referred to Koryoe's time managing. But it is also verified that Koryoe's lunar week system consists of 7 days was different from that of China which had regular day-offs every 10 days,

Traditional holiday(俗節) vacations of Koryoe were yearly based. There were 9 holidays in Koryoe: New Year's Day(元正), January 15th(上元), the 105th day after the winter solstice(寒食), March 3rd(上巳), May 5th(端午), August 15th(秋夕), September 9th(重九), the winter solstice(冬至), November 15th(八關). On New Year's Day 7 vacation days were given. On January 15th and November 15th when great Buddhist night festival were held 3 day-offs were allowed to each day. Overall, winter holidays tended to have more vacation days than summer. And every four seasons had 2 holidays in average except new years' holidays in January. It could be possible to say 9 traditional holidays of Goryeo were seasonal.

In result, Goryeo's vacation system had structural periodicity of 1 year, 4 seasons, 12 months and 48 weeks, with the idea of Cosmological Time to flow orderly along with it.